

경운대학교 직장방위협의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의 제2항, 동 시행령 제23조의 3에 의거 경운대학교 직장예비군을 육성, 지원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경운대학교 직장방위협의회 명칭은 경운대학교 직장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 경운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(구성)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교무처장, 학생진로개발처장 및 사무처장은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, 필요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2. 간사는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한다.
3.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제4조(의장 등의 직무) ① 협의회에는 의장, 부의장 각 1인을 두며, 의장은 총장이 되고 부의장은 총장이 정한다.

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.

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.

②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심의사항)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직장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
2. 자체 방위 계획에 관한 사항
3. 직장예비군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4. 직장예비군 교육 훈련 및 그에 따른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
5. 예비군 부대 규모의 변경에 관한 사항
6. 예비군 지휘관 추천에 관한 사항
7. 직장민방위대 지원에 관한 사항
8.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

제7조(서기) ① 협의회에 서기 1인을 두되, 예비군 관계직원으로 한다.

② 서기는 의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